

2021년 제7차 이사회 의사록

I 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 ☐ 일시: 2021. 11. 29.(월) 14:00 ~ 16:00
- ☐ 장소: 72동 415호(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

2. 참석현황

- ☐ 참석이사: 전수안(이사장), 정종철(교육부 차관, 代 이강국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 최창원, 이기형, 권오규, 지은희, 오세정(총장), 여정성(교육부총장), 이원우(기획부총장), 정철영, 김병섭, 박현애 (이상 12명)
- ☐ 불참이사: 안도걸(기획재정부 제2차관), 성기학, 류근관 (이상 3명)
- ☐ 참석감사: 마광열, 윤현철 (이상 2명)
- ☐ 배 석: 김용진 기획처장, 김은미 교무처장, 이현숙 연구처장 (이상 3명)

3. 회의안건

☐ 보고사항

- 제1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도입방안 검토
- 제2호. 학술림 등 국유재산 무상양여 관련 중간보고
- 제3호. 2022년도 대학운영계획 수립(안) 보고

☐ 추진 및 심의·의결사항

- 제1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혁신공유학부 설치 등)

☐ 심의·의결사항

- 제1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미래연구위원회)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제2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일부개정정관(안)(비대면 이사회 등)

제3호.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비대면 이사회 등)

제4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선임(안)

☐ 기타사항

제1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II 회의 내용

1. 개회

- 전수안 이사장이 성원을 확인한 후 오후 2시에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 김용진 기획처장이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하고, 전수안 이사장이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보고사항

제1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도입방안 검토

☐ 주요내용

- 김용진 기획처장이 ERP 도입 필요성 및 도입효과, 구축경과, 타 대학 도입 사례, 서울대 ERP 도입 및 추진방안, 추진일정 등을 보고함

제2호. 학술림 등 국유재산 무상양여 관련 중간보고

☐ 주요내용

- 김용진 기획처장이 학술림 등 국유재산 무상양여 관련 검토 배경, 주요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경과, 법적조치 이행 여부, 범무법인 의견, 협의를 통한 무상양여 추진 등을
보고함

제3호. 2022년도 대학운영계획 수립(안) 보고

□ 주요내용

- 김용진 기획처장이 2022년도 대학운영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상세 비전, 교육미션, 성과목표, 실행과제 등을 보고함

3. 추인 및 심의·의결사항

제1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혁신공유학부 설치 등)

□ 주요내용

- 입학 시 모집단위가 아닌 교육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안 제3조제6항)
-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시행 근거 명시(안 제5조제1항)
- 본교에 혁신공유학부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함
(안 제14조제4항)
-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의 수업연한 및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사항 명시
(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 학사·석사 연계과정의 재학연한을 10년에서 수업연한의 2배인 12년으로
변경하고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재학연한을 명시(안 제53조제1항)
- 학사 및 대학원과정 학생이 9학점 이상 15학점 이하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그 이수내역을 인증받을 수 있는 교과인증과정 신설(안 제77조의2)
- 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및 졸업과 관련한 조항에 학사·석사·박사통
합 연계과정 관련 사항 명시(안 제75조제3항 및 제88조제3항)
- 재입학·복학하는 경영전문대학원 학생에게 단축된 수업연한을 적용하도록 기
개정된 부칙 적용례(제2223호, 2020.3.25.)의 일부 삭제 내용 추가(안 부칙 제2조)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교육조직의 설치)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3조(교육조직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학 시 모집단위가 아닌 교육조직을 둘 수 있다.</u> [신설 2021.00.00.]	※ 모집단위가 아닌 교육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제5조(학위과정의 연계 및 통합) 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이 상호 연계된 과정(이하 “ <u>학사·석사연계과정</u>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전문석사학위 과정과 학술박사학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복합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④ <u>학사·석사연계과정</u> , 학사·석사통합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24.]	제5조(학위과정의 연계 및 통합) 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이 상호 연계된 <u>학사·석사 연계과정과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u> 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00.00.]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전문석사학위 과정과 학술박사학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복합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④ <u>학사·석사 연계과정,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u> , 학사·석사통합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0.00.] [전문개정 2013. 4. 24.]	※ 학사·석사·박사통합연계과정 운영 근거 명시
제14조(대학·대학원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4조(대학·대학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본교에 제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혁신공유학부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 [신설 2021.00.00.]	※ 혁신공유학부추가
제52조(수업연한) ① (생략) ②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u>학사·석사연계과정</u> : 6년 이상 4. ~ 6. (생략) <u><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제52조(수업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u>학사·석사 연계과정</u> : 6년 이상 [개정 2020. 3. 25., 2021.00.00.] 4. ~ 6. (현행과 같음) 7. <u>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u> : 8년 이상 [신설 2021.00.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수업연한 및 단축가능 기한 명시

간 서명 | 이사장 전수안 (인) | 이사 최창원 (인) | 이사 박현애 (인)

현행	개정(안)	비고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1. ~ 2. (생략) 3. <u>학사·석사연계과정</u> : 1년 6개월 4. ~ 5. (생략) <u><신 설></u> ④ [삭제 2018. 6. 15.]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1. ~ 2. (현행과 같음) 3. <u>학사·석사 연계과정</u> : 1년 6개월 [신설 2020. 3. 25.][개정 2021.00.00.] 4. ~ 5. (현행과 같음) 6. <u>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u> : 1년 6개월 [신설 2021.00.00.] ④ [삭제 2018. 6. 15.]	
제53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6. 15.] 1. ~ 3. (생략) 4. <u>학사·석사연계과정</u> : <u>10년</u> 5. ~ 7. (생략) <u><신 설></u> ② ~ ④ (생략)	제53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6. 15.] 1. ~ 3. (현행과 같음) 4. <u>학사·석사 연계과정</u> : <u>12년</u> [개정 2021.00.00.] 5. ~ 7. (현행과 같음) 8. <u>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u> : <u>16년</u> [신설 2021.00.00.] ② ~ ④ (현행과 같음)	※ 재학연한을 수업연한의 2배로 설정
제7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학사·석사연계과정</u> 이수자는 제1항의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7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학사·석사 연계과정 및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u> 이수자는 제1항의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1.00.00.]	※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관련사항 명시
<u><신 설></u>	제77조의2(교과인증과정 이수) ① <u>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9학점 이상 15학점 이내로 구성된 교과과정(이하 “교과인증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이수내역을 인증받을 수 있다.</u> ② <u>교과인증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 [본조신설 2021.00.00.]	※ 교과인증과정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제88조(학사과정의 졸업) ① ~ ② (생략) ③ 제5조에 따른 <u>학사·석사연계과정</u> 이수자에게는 제1항의 졸업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를	제88조(학사과정의 졸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에 따른 <u>학사·석사 연계과정 및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u> 이수자에게는 제1항의 졸업논문	※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명시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현행	개정(안)	비고
면제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0.00.] ④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부칙 <제2223호> 제2조(적용례) 제5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고, 제78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전 제52조제2항제1호> 1. 석사과정 : 2년 이상(다만, ~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및 SNU MBA는 1년 6개월 이상, Executive MBA는 2년 이상)	부칙 <제00000호,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서울대학교 학칙 제2223호 부칙 제2조에서 “제52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고,” 부분은 삭제한다.	※ 재입학·복학하는 경영전문대학원 학생에게 단축된 수업연한 적용을 위함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은미 교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추진 및 심의·의결함

4. 심의의결사항

제1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미래연구위원회)

□ 주요내용

- 미래연구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 변경, 총 위원수 20명 이내로 확대, 기타 조문 정비 (안 제44조제2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44조(미래연구위원회) ① (생 략) ② 미래연구위원회는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연구부처장과 <u>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u>	제44조(미래연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연구위원회는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연구부처장과 연구 분야에 <u>풍부한 경험이 있거나</u> 탁월한	※ 위원 임명 절차 변경, 총 위원수 확대, 기타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현행	개정(안)	비 고
연구 분야에 <u>많은 경험과</u> 탁월한 식견이 있는 교원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1. ~ 6. (생 략) ⑤ (생 략)	식견이 있는 <u>사람으로서 총장이 임명하는</u> 교원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u><신 설></u>	<u>부칙 <제00000호, 0000.00.00.></u> <u>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이현숙 연구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안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함
- 수정 전: 미래연구위원회는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연구부처장과 연구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수정 후: 미래연구위원회는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연구부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일부개정정관(안)(비대면 이사회 등)

□ 주요내용

- 이사회의 개최 ‘장소’ 를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최 ‘방식 등’ 을 통지하도록 수정하고 그 외 일부 자구수정(안 제13조제3항)
- 이사회의 회의 방식에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추가(안 제15조제4항)
-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서면결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5항)
-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확인 방법에 전자서명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② (생략)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u>회의개최</u>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u>장소</u> 를 이사와 감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u>회의개최 전일까지</u> 이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u>회의 개최</u>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u>방식 등을</u> 이사와 감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u>회의 개최 전날</u> 까지 이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u>[개정 0000. 00. 00.]</u>	따옴표수정 비대면 이사회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수정 따옴표수정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 반영)
제15조(이사회의 정족수 등) ① ~ ③ (생략) ④ <신설> ⑤ <신설>	제15조(이사회의 정족수 등)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u>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통하여 출석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u> <u>[신설 0000. 00. 00.]</u> ⑤ <u>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000. 00. 00.]</u>	비대면 이사회 개최 근거 신설 (사립학교법 제18조 제2 항 참조) 이사회 서면 결의 근거 신설(서울대 이사회 운영 규정 제8조 제4항 반영)
제17조(이사회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7조(이사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 <u>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u> 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u>[개정 0000. 00. 00.]</u> ③~④ (현행과 동일)	의사록 비대면 서명 근거 신설
<신설>	<u>부칙 <제00009호, 0000. 00. 00.></u> <u>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u>	

간 서명 | 이사장 전수안 (인) | 이사 최창원 (인) | 이사 박현애 (인)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3호.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비대면 이사회 등)

□ 주요내용

- 규정 명칭을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개정하여 교내 다른 규정들과 같이 본교의 규정임을 명시(안 규정 명칭)
- 이사회의 개최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최 ‘방식 등’을 통지하도록 수정하고 그 외 일부 자구수정(안 제7조)
-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확인 방법에 전자서명을 추가(안 제15조제1항)
- 이사회 간사를 당연직(기획처장)으로 명시(안 제16조제1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u>이사회 운영 규정</u>	<u>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회 운영 규정</u>	규정 명칭 수정
제7조(회의통지) 이사장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u>장소 등을</u> 확정한다. 다음 <u>회의개최</u> 7일 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각각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u>회의개최 전일</u> 까지 위 사항을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회의통지) 이사장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u>방식 등을</u> 확정한다. 다음 <u>회의 개최</u> 7일 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각각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u>회의 개최 전일</u> 까지 위 사항을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비대면 이사회가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 수정 띄어쓰기 수정(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 반영)
제15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이사회 및 소위원회 회의내용은 이사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에 기재하고 이사장(또는 위원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다. ②~④ (생략)	제15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이사회 및 소위원회 회의내용은 이사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에 기재하고 이사장(또는 위원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u>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u> 한다. ②~④ (현행과 동일)	의사록 비대면 서명 근거 신설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현행	개정(안)	비고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 직무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처장이 되고 서기는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 직무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동일)	이사회 간사를 당연직 기획처장으로 명시
<u><신설></u>	<u>부칙 <제00005호, 2021. 11. 29.></u> <u>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4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선임(안)

□ 주요내용

- 2022. 1. 21., 2. 8.자로 임기만료되는 이사 4명(외부 3명, 내부 1명)의 후임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후보초빙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외부 8명, 내부 2명)를 대상으로 이사 선임 결의

□ 심의결과

- 전수안 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거쳐 참석이사 과반수 득표를 얻은 4명을 2022. 1. 21., 2. 8.자 임기 만료 예정 이사들의 후임이사로 선임함
- 외부인사(3명): 권오곤(한국법학원 원장), 김택진(NC소프트 대표이사 CEO), 최창원(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 연임)
- 내부인사(1명): 김병섭(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연임)
- 연임하는 최창원·김병섭 이사의 경우 2022. 1. 22.자로 임기 시작, 신임 권오곤·김택진 이사후보자의 경우 전수안 이사장의 후임인 권오곤 이사후보자가 2022. 1. 22.자로 임기 시작, 이기형 이사의 후임인 김택진 이사후보자가 2022. 2. 9.자로 임기 시작하는 것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5. 기타사항

제1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 2022년 제1차 이사회를 2022. 1. 17.(월) 오후 5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 2022년 제2차 이사회를 2022. 2. 15.(화)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회

- 보고 및 심의를 종료하고, 전수안 이사장이 오후 4시에 폐회를 선언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이사장 전 수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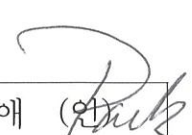
(인) 

이 사 최 창 원

(인) 

이 사 박 현 애

(인)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